

수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795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7951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689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G

피고, 항소인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변론 종결 2024. 5. 2.

판결 선고 2024. 6. 2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689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평택시 M 전 2,02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020분의 57 지분에 관하여, 피고 E과 G 사이에 2021. 7.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G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13. 접수 제32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020분의 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과 G 사이에 2021.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G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13. 접수 제32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A가 2021. 12. 13.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2. 23. G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이후 G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경진

판사김용태